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63540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1. 9. 30.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8.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원고는 [redacted]시 [redacted]구 B에 아파트(연면적 197,600.516㎡, 1,237세대, 10개동 규모,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해 2017. 8. 2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갑 제6호증).

나. 취득세 등 신고·납부

원고는 2017. 10. 11.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등으로 합계 8,167,151,730원을 신고·납부했다(을 제1호증).

다.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8.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했다(을 제2호증).

- 피고는 2018. 11. 8. 위 경정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등을 일부 감액했다.

2) 원고는 2019. 7. 26.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아래 표에 적힌 각 비용을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고 청구했다.

항목	금액
주변 통신관로 지중화 공사비용	443,100,000원
도시계획시설 설치공사 비용	2,600,195,450원
방음벽 설치공사 비용	1,130,000,000원
부가가치세	431,626,279원
원고가 [redacted]시장에게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이하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한다)	4,637,742,170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원고가 [redacted]시장에게 납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이하 **'이 사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1,013,936,000원
원고가 [redacted]공사에게 납부한 전선로 이설부담금 (이하 **'이 사건 전선로 이설 부담금'**이라 한다)	1,400,264,029원

- 조세심판원은 2020. 11. 19. '위 각 비용 중 일부[주변 통신관로 지중화 공사 비용, 도시계획시설 설치공사 비용, 방음벽 설치공사 비용, 부가가치세(즉, 위 표에 음영으로 표시되지 않은 부분)]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갑 제1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 이 사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이 사건 전선로 이설 부담금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비용도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법리

-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조 제8항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밖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 포함**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7386 판결 등 참조).

라.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① [redacted]시장은 2015. 5. 13. 원고에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된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 579,717,771.837원(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격) × 8/1,000]을 부과했다.

- 원고는 2015. 6. 11. [redacted]시장에게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다.

② 원고는 **2017. 8. 23.** [redacted]교육지원청장과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되어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 있는 C초등학교를 증·개축해야 하므로, 원고가 그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위 협약에 따라 2017. 8. 25. [redacted]교육지원청장에게 C초등학교를 증·개축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합계 6,696,800,000원을 납부했다.

③ [redacted]시장은 **2019. 7. 16.** '원고가 위 사업비를 납부함으로써 학교시설을 무상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공급했다'는 이유로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

학교용지법은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제5조 제1항), 시·도지사는 위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예시에 불과하다. 또한 [redacted]시장이 학교용지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하는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상당하다.

②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 상승에 기여함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학교시설을 마련하는 데 사용되고, 위 학교시설이 마련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도 올라간다. 따라서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물건의 판매를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고(제2조 제3호),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이 분양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람'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며(제5조 제1항),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이처럼 학교용지법은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그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고, 다만 그 액수만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용지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학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 '취득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 공동주택의 '판매를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 학교용지부담금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이다. 그런데 학교용지법이 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자가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위와 같은 학교용지법 개정취지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개발사업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함으로써 이익을 얻지만, 동시에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할 필요성을 만들어내므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부과하는 게 옳다는 데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개발사업자가 얻는 이익은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학교용지 부담금이 공동주택 취득과 무관한 분양에 관한 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redacted]시장으로부터 받환받은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원고는 [redacted]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판단]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 제4호는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을 만들어내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원고는 [redacted]교육지원청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 있는 C초등학교를 증·개축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로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보다 더 많은 6,696,80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redacted]시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을 소급적으로 없앴고, 이를 이유로 [redacted]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받았으므로, 위 사업비와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대체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가 위 사업비를 납부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

㉢ 따라서 원고가 [redacted]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받았더라도,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실상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이 사건 처분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비과세 관행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행정자치부가 2015. 12. 11.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하기 전까지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비과세관행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위와 같은 비과세관행을 위반하여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난다.

[판단]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관청이 과세물건에 대하여 오랫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과세물건에 오랫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묵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

- 그런데 일단 성립한 비과세관행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이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앞으로는 그 과세물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하려면 적어도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밝힘으로써 납세자가 더 이상 기존에 있던 비과세관행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250 판결 등 참조).

㉡ 행정자치부는 과거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유권해석을 했지만, 2015. 12. 11.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과거의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이처럼 행정자치부는 과거의 유권해석을 변경함으로써 공적인 견해를 밝혔다.

㉢ 그런데 원고는 행정자치부가 과거의 유권해석을 변경한 뒤인 2017. 8. 25.에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했다(원고도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신고서에 이 사건 아파트를 2017. 8. 25. 취득했다고 적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리라고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뢰는 보호될 만한 가치가 없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외된다고 확인해주지도 않았다.

마. 이 사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① 원고와 [redacted]시장은 2015. 2. 2. '수도법 제71조 제1항, 수도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따라 원고가 [redacted]시장에게 납부해야 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② 이에 따라 [redacted]시장은 2017.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2017. 2. 13. [redacted]시장에게 이 사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도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수도법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등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1조 제1항). 앞서 본 것처럼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예시에 불과하다. 그런데 [redacted]시장은 수도법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고, 원고가 이 사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에 수돗물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하는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수돗물이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는 주거 목적을 위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도 이 사건 아파트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재원으로 설치된 시설의 소유권이 [redacted]시에 귀속되므로, 이 사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비용으로 취득한 물건의 소유권이 취득세 납부의무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는 그 비용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전선로 이설 부담금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미관을 정비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원활히 분양하기 위해 [redacted]공사에게 전선로(이하 '이 사건 전선로'라 한다)를 이설해 달라고 요구했고, 한국전력공사는 위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전선로를 이설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②[redacted] 공사는 2016.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선로 이설 부담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2016. 11. 2. [redacted] 공사에게 이 사건 전선로 이설 부담금을 납부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선로 이설 부담금도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redacted]공사가 이 사건 전선로를 이설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redacted]공사가 이 사건 전선로를 이설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미관이 정비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도 높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도 이 사건 전선로 이설 부담금을 공사원가로 인식하여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신고했다.

사.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 이 사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이 사건 전선로 이설 부담금은 모두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제9조(권한의 위임)

① 시·도지사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18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